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10월부터 삭제

-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등급의 제한이 없고 신청 즉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함.
 - 지난해 보험회사 약관대출 잔액은 35조 777억원으로 보험회사의 총 가계대출 중 59.7%를 차지함.
 - 약관대출의 연체율은 4.2%로, 부동산담보대출 0.6%와 신용대출 2.0%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.

-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약관대출 연체이자를 일체 물리지 못하게 하는 보험회사 약관대출 규정이 반영된 표준약관을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.
 - 과거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약관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약 연 20%대의 연체 이자가 부가되었으나 2007년 대법원 판결로 연체이자를 가산하지 못하게 됨.
 - 2007년 대법원이 약관대출은 나중에 받을 해약환급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대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고 이 내용이 보험약관에 반영된 것임.

- 보험회사마다 단일금리방식, 구간금리방식, 가산금리방식 등 제각각이었던 약관대출 금리산정방식도 예정이율+가산금리 방식으로 표준화하기로 결정함.
 - 지금까지 일부 보험회사들은 구간금리를 적용해 예정이율이 5~7%일 경우 대출금리를 연 9.5%로 고정하거나 가산금리방식일 경우에도 보험회사마다 예정이율*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하여 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옴.
 -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의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적용금리가 1.5~4% 포인트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옴.
 - * 예정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벌 수 있는 예상 수익률임.
 -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산금리방식의 표준화를 결정했으며 가산금리는 보험회사와 보험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.5~2% 범위내에서 일정하게 정해질 전망이다.

(연20% 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10월부터 없앤다 등, 이데일리 등, 8/26)